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6.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안 제2조)

나.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취소 등(안 제7조, 안 제8조)

라. 사업지원(안 제9조, 안 제10조)

마. 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안 제11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등록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구미시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업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농어업인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미시 외의 지역에서 구미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귀농·귀촌 지원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귀농·귀촌 관련 교육훈련과 전문 인력의 육성 방안
3. 귀농·귀촌의 홍보 및 정보화 촉진 방안
4. 귀농업인과 귀촌인의 주거, 생활 및 농업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제5조(귀농업인·귀촌인 정착 지원) ① 시장은 귀농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귀농 초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업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7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시장은 귀농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법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2항의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검사를 방해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지원) ①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시책의 추진
2.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농어업 창업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4.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 비용 지원
5. 농지, 축사, 양식장 등 매입 또는 임차 비용 지원
6. 귀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및 실습 비용 지원
7.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법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귀농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귀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귀농·귀촌공동체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및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제공)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교통·문화·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원센터 또는 제10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업인·귀촌인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지원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

제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업인·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그 밖에 귀농업인·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

② 시장·군수·구청장(광역시의 자치구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시·도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군·구 귀농어·귀촌 지원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세울 때에는 각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도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시·군·구 수산업·어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⑤ 생략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귀농어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농어업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0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귀농어업 및 귀촌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상담과 안내, 정보 제공, 교육 사업
2.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농어업 기술지도 및 농어촌 적응 교육 사업
3. 귀농어업 및 귀촌 관련 조사 및 홍보, 정책 발굴 등에 대한 사업
4. 그 밖에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생활안정, 농어업 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알선
2. 귀농어업인의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3. 귀농어업인·귀촌인의 일자리 및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구입·신축·수리 또는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이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농어업 법인 등에서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신청자격,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영농·영어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가치제 임대·은행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등은 귀농어업인·귀촌인이 시설농어업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관내·관외 유희농지·유희시설에 대한 중개 알선과 시설의 신규 설치 및 개수·보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 받거나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될 법인의 범위 및 지원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① 귀농어업인·귀촌인은 귀농어·귀촌을 함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단체(이하 "귀농어·귀촌공동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귀촌공동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생략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귀농어업인) 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1.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있던 사람이 농업인 또는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이하 "전입신고"라 한다)를 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람

나.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귀촌인)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 중인 사람
3. 직장의 근무지 변경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이주한 사람
4. 귀농어업인

제6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① 법 제8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귀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영농·영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다른 귀농어업인에 우선하여 할 수 있다.

③~⑤ 생략

제9조(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요건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나.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
 -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어업법인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귀농어·귀촌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3.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을 것
 4. 농업인·어업인 교육, 상담·컨설팅 및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5.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갖출 것
- ② 법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귀농어업인·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사업
 2. 법 제14조에 따른 귀농어·귀촌 관련 박람회 등의 참여 및 개최
 3.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
 4. 지원센터 간 협력사업
 5. 그 밖에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 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인력 및 시설 현황

3. 사업계획서

4. 귀농어·귀촌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실적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⑥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 사업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법인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법인으로서 정관의 사업내용에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법인으로 한다.

1.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2.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른 농어업법인

② 생략

제16조(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 기준 등)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귀농어·귀촌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인 가구가 10가구 이상 참여할 것

2.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대표자를 선정할 것

3. 귀농어·귀촌공동체가 운영하는 귀농어·귀촌 관련 사업의 사업계획서를 갖출 것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려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귀농어·귀촌공동체로 등록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귀농어·귀촌공동체 등록증을 발급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귀농어·귀촌공동체의 등록과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주민등록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 ①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하면 제11조나 제12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전입신고(轉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⑤ 생략

구미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귀농·귀촌 지원계획 수립에 따른 귀농·귀촌 종합센터, 귀농업인·귀촌인 등 사업지원으로 인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에 따라 재정수반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2호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구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원사업 소요재정의 추계가 어려움(안 제4조)

4. 작성자

농정과 지방농업주사보 김효섭(480-5762)

소관 실·과		선산출장소 농 정 과
입 안 자	과 장	이 형 근
	담 당	강 의 규
	담 당 자	김 효 섭 (480-5762)